의안번호	제 140 호
의 결	년 월 일
연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임순묵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15년 2월 23일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순묵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

발의연월일 : 2015. 2. 23.

발 의 자 : 임순묵, 박병진, 강현삼,

김봉회, 임헌경, 이광진,

임회무

1. 개정이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장사무 규정상 정무부지사 소관 위원회임에도 현행 조례에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 → '재난관리'로 용어 통일(안 제7조)

나.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 변경(안 제8조)

1) 행정부지사 →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

3.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협 의 : 균형건설국 치수방재과와 협의

라.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재난업무"를 각각 "재난관리 업무"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부지사"를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재난업무"를 "재난관리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재난업무"를 "재난관리 업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	제7조(회계공무원) ①
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
1. 기금운용관 : <u>재난업무</u> 담당국장	1 <u>재난관리 업무</u>
2. 분임 기금운용관 : <u>재난업무</u>	2 <u>재난관리 업</u>
담당과장	<u>무</u>
3. 기금출납원 : <u>재난업무</u> 담당사	3 재난관리 업무
무관	_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②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위원장은 <u>행정부지사</u> 가 되고,	③ 재난관리 업무를 관장
부위원장은 <u>재난업무</u> 담당국장이	하는 부지사- 재난관리 업무
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	7
여 간사 1명을 두되, <u>재난업무</u> 담	<u>재난관리 업무</u>
당사무관이 된다.[제6항에서 이	
동<2015. 1. 1>]	_